석좌교수에 관한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인사 규정에 의한 석좌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격) 석좌교수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로 연구 및 교육경력과 전문직 종사경력의 합이 20년 이상이며, 학계 및 사회로부터 덕망이 높아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로 한다.
- 제3조(임용절차) ① 석좌교수는 교학지원처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용기간, 대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석좌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4조(구비서류) 석좌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 - 1. 소속부서장이 작성한 교육,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
 - 2. 연구업적 조서
 - 3. 이력서
 - 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- 제5조(임용기간)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총장이 정하되 외부의 출연기금에 의해 선정된 석좌교수는 당해 석좌교수기금 또는 기부금이 계속 출연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임무)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과의 강의 및 연구
 - 2. 특별 강의 및 세미나
 - 3. 기타 교육, 연구 및 행정에 관한 자문
- 제7조(처우) 석좌교수에 관한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별도의 연구비는 개인별 지급 금액규모에 따라 연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5. 1. 13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폐지규정) 교직원인사규정의 특수신분교수(석좌교수)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.